

목 차

비정규직법 후속대책

2009. 7. 27

I. 비정규직법 추진배경 및 경과	1
II. 향후 대책	2
1. 비정규직 실적 등 모니터링 강화	2
2.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지원	2
3. 정규직 전환 및 편법고용부당해고에 대한 지도강화 ...	3
4.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 도입 검토	4
5.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 등 추진	5

I. 비정규직법 추진배경 및 경과

1. 추진배경

- 비정규직 남용방지(2년 고용기간 제한) 및 불합리한 차별시정을 위해 법을 제정('07.7.1 시행) 하였으나
 - 차별개선제도는 다소 효과가 나타났지만, 2년의 짧은 고용기간 제한으로 도리어 더 큰 부작용 초래
 - 기간제 평균 근속기간이 2년 5개월('09.3월 기준)임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2년을 넘지 못하게 한 것은 기업의 고용현실과 맞지 않고, 비정규직 당사자의 선택을 지나치게 제약
 - 기업은 숙련인력 손실로 생산성 저하 초래, 비정규직 근로자도 직무 또는 업무숙련도를 높이는데도 불리
 - 기업,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, 법에 의해 실직될 수밖에 없는 사태 발생

2. 추진경과

- '08.5-'09.3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법 시행효과 및 보완방향 논의
- '09.3.13-23 입법예고, 3.30 국무회의, 4.1 법개정안 국회 제출(기간제법·파견법)
 - 고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 → 4년 연장, 차별시정 신청기간 3개월 → 6개월 연장
 - 사회보험료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의 고용개선특별법은 4.20 국회제출
- 4월 국회에서 환노위위원장 및 민주당 등의 반대로 환노위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함
- 6월 이후, 여당은 당론을 한시적 유예안으로 결정(3년 유예안으로 의원입법 발의)
 - 여야는 5인 연석회의(6.19~6.30),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렬,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

II. 향후 대책

- ◇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및 실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
 - 실직자에 대해 적극적인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및 편법고용·부당해고에 대한 지도강화
- ◇ 비정규직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, 차별시정 강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 추진

1.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실직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

-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규모, 근속기간 2년 초과자인 비정규직의 이동경로 등을 분석(통계청과 협조)
- 전국 1만개 사업체 표본조사를 통해 '09.7월 이후 계약이 만료되는 근속기간 2년 이상자의 고용불안규모(정규직전환 및 실직) 등을 파악
- 비정규직 실직자의 실업급여 신청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직 현황 조사

2.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지원

Ⅰ 비상대응체계 운영(계속)

- 본부에 「비정규직 비상대책 상황실」 운영
 - 비정규직 실직동향 모니터링·분석 및 실직자 지원상황 점검
- 지방관서에 「비정규직 전담 상담창구」(고용지원센터) 지속 운영
 - 실직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, 실직자가 원하는 고용지원서비스를 확인하여 해당창구(실업급여, 피보험자격, 직업훈련 등)로 연결

②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및 재취업지원 강화

- * 기 시행중인 실직자 지원대책(일자리 제공, 재취업촉진, 생계지원, 직업훈련 등 10개 사업)을 강화, 비정규직에 특화된 실업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
- (실업급여 조속 지원) 2년 초과를 이유로 실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에게 실업급여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
 -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근무기간,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여 지급
- (실직자 특성에 맞는 재취업지원 강화) 비정규직 실직자의 성·연령·학력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취업지원 적극 실시
 - * 중소기업 빈일자리, 사회적 일자리 등을 활용하고, 개별기업의 실직사례를 모니터링하여 구인정보로 활용
- (직업훈련을 통한 능력개발)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해 직업훈련계좌를 발급하여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
 - * 직업훈련 중인 실업자로서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600만원 한도로 생계비 대부(이율 3.4%)

3. 정규직 전환 및 편법고용·부당해고에 대한 지도강화

- 근속기간 2년이 도래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권장
 - 우수사례집 발간·배포 등 정규직 전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
-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므로,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 안내

- 고용종료후 재고용, 근로계약 만료전 고용관계 종료 등 비정규직 편법고용·부당해고 사례에 대한 지도 강화

* 「비정규직법 바로 알기(오해와 진실)」를 지방관서에 배포 예정

- 55세 이상 고령자 등 사용기간 적용 예외자가 법(2년 기간제한)에 의해 실직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
 - * 적용제외자 : 55세 이상자,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, 박사학위·기술사·건축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,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해 일하는 경우 등

4.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 도입 검토

- 여야합의로 부대의결한 예산안*에 대해 별도의 국회의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이를 집행하기는 어려움
 - * 4월 국회에서 추경 예산 논의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규정이 포함된 법률 개정을 전제로, 정규직 전환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및 사회보험료 감면 부대의결(10만명, 1인당 월 25만원, 5개월 총 1,185억원)
-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중손실 및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는바 신중한 검토 필요
 - * 당초 정부가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려는 목적은 법 개정(기간연장)이 없었더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었던 기간제 근로자의 기대이익을 고려하여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
-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계없이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 공제제도(1인당 30만원, '09년말까지 시행)를 활용하여 지원

5.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 등 추진

① 비정규직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

- 2년 기간제한 등 비정규직법이 전체 노동시장(고용의 경직성, 외주화 확대, 임금·근로여건 등의 변화 등)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,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마련
 - '09년 하반기 연구용역 실시

② 차별시정제도 적극 운영

- (홍보강화) 금년 7월부터 5~100인 미만 사업장에 차별시정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
 - 미디어 홍보(TV, 라디오, 무가지, 신문), 사업장 설명회 등 개최
- (차별개선 지도) 지방관서별로 차별시정 '전담감독관'을 지정하여, 차별시정제도 교육 및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
 -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구조개선을 위해 컨설팅 비용지원(총 348개소 목표,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)
- (차별시정 활성화) 차별시정 절차에서 노동위원회 차원의 조사강화, 공인노무사 무료지원, 노동조합의 조력·대리역할 활성화

④ 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

- 불법파견·위장도급 근절 등을 위해 사업장 점검 실시
 - 지방관서는 비정규직 다수고용업체 최저임금·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수시 점검, 무허가 파견업체 집중단속 및 수시점검 실시
 - 각 청별 사내하도급 분야 TF 구성·운영하여 불법 파견여부 지도·점검
 - 파견·도급 구별관련 참고 자료집(판례 등) 제작·배포 예정(8월중)

- 사내하도급·용역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원·하청 기업의 자율 개선 지도

-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원·하청 기업의 역할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정('09.9~10월 노사의견 수렴, 11월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홍보)

⑤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

- 비정규직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확대하여 정규직으로의 이동 가능성을 제고
 -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로자능력개발지원금 제도(수강지원금, 능력개발카드제 등)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
 - 평상시 직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비정규직을 위해 주말·단기 고급 훈련과정 제공
 - 「직업능력개발 지식포털 사이트」를 구축하여 비정규직이 시간·장소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('10년 상반기 완료)

⑥ 사회보험 등의 적용 강화

- 사회보험 관리체계를 촘촘히 구축하여 누락 사업장을 집중 발굴,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
- 영세기업(9인 이하 기업)의 자율적 가입을 촉진하고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특별신고기간('09.5~7월)을 설정, 과거 체납보험료 및 가산·연체금 면책
-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(약 2조원)을 기업복지 프로그램에 활용토록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